

의안번호	2213306
의 퇴 인	이만희 의원
회 답 일	2025. 11. 10.
추 계 번호	25C535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0억 8,800만원(연평균 26억 1,800만원)의 기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수입 변동: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당연가입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외(안 제126호)	△2,061	△2,441	△2,645	△2,858	△3,083	△13,088	△2,618

주: 개정안 부칙은 이 규정을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는 11개월분의 수입 감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당연가입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현행)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제외 대상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 최근 가입자 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당연가입 대상 제외 외국인’의 범위는 유지되고,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제외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외될 경우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민연금은 2022년 7월부터 사업장 당연가입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포함되기 시작¹⁾함
- 본 추계서는 2024년 월평균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가입자의 수가 추계 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1)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12월 이후 법무부로부터 E-8(계절근로자) 체류자격코드를 입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신고대상을 구축하였고, 2022년 7월부터 가입자가 확대됨

- 월평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43명, 2023년 344명, 2024년 892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제도 안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2024년 가입자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 다만, 개정안 부칙은 이 규정을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는 11개월분의 수입 감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의 규정을 적용
- 추계결과,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0억 8,800만원(연평균 26억 1,800만원)의 기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2]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외 시 수입 변동 추계: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월평균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입자 수(A, 명)	892	892	892	892	892	-	-
평균 기준소득월액(B, 천원)	2,211	2,281	2,353	2,428	2,505	-	-
보험료율(C, %)	9.5	10.0	10.5	11.0	11.5	-	-
가입기간(D, 개월)	11	12	12	12	12	-	-
수입 변동 예상액 (A×B×C×D, 백만원)	△2,061	△2,441	△2,645	△2,858	△3,083	△13,088	△2,6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가입자 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변동될 경우 기금 감소액 역시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의 변동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보고, 최근 가입자 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기금 수입 감소분을 추계함

□ 참고로, 체류자격코드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보장협정 및 상호주의²⁾에 따라 계절근로자 중 일부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급할 반환일시금도 감소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계절근로자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2024년 기준 8억 4,200만원 수준

○ 다만, 지출 감소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³⁾

[표 3] 계절근로자 중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건수	반환일시금 지급 총액
2022	50	52
2023	534	430
2024	873	842

자료: 국민연금공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

- 2)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맺는 협정을 의미하고, 상호주의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혹은 원칙을 의미함

-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후략)